기관운영감사

분류번호	2017-기관-028

감 사 보 고 서

- 한국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

2018. 6.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3

Ⅲ. 감사결과 ····· 5

1. 감사결과 총괄 ·····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6

(1) 오수처리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등(문책·주의9·통보) 7

(2)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31

(3)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38

(4)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 등(문책·주의) ····· 45

(5) 제설작업 태만 및 특별점검 미실시(문책·주의) ····· 57

(6) 밸브박스덮개 자체 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통보(모범)] ····· 65

(7)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 부적정(주의·통보) ····· 68

(8) 현장설명 불참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주의) ····· 73

(9)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부적정(주의·통보) ····· 77

(10) 보안검색감독자 배치 부적정(주의·통보) ····· 80

(11)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 부적정(통보) ····· 84

(12) 임직원 외부활동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 8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을 건설, 관리, 운영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없어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계약 및 자산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이후 2017. 10. 30.부터 같은 해 11. 3.까지 5일간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예상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2017. 11. 15.부터 같은 해 12. 7.까지(11. 21.~11. 26. 제외) 13일 동안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12. 5.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6. 1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일반 현황

가. 조직 : 5본부(실·팀), 3개 지역본부 11개 지사

나. 인력 현황(2017. 10. 31. 현재)

(단위: 명, %)

구분	합 계	임 원	일반직	별정직	안전보안직
정원(비율)	2,013(100)	6(0.3)	1,540(76.5)	12(0.6)	455(22.6)
현원(비율)	2,015(100)	6(0.3)	1,569(77.9)	6(0.3)	434(21.5)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운영 공항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 ○●, ○◆, △	○◎, ○▼
민·군공용(8개)	○◀, ○■, ○▽	○□, ○◁, ◐, ○△, ○▲
항공노선	국내선(19개 노선), 국제선(12개국 87개 노선)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라. 운항 실적

(단위: 편, 만 명)

구분	'14년	'15년	'16년
운항(편수)	416,644	447,734	481,185
여객(수)	6,163	6,936	7,852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재무 현황

가. 손익

(단위: 억 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익	7,947	8,421	8,561
비용	6,212	6,547	6,659
당기순이익	1,735	1,874	1,902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나. 2016년도 공항별 경영손익(본사 제외)

(단위: 억 원)

구분	♡♡	○◀	○●	○◎	○▼	○◁	○◆	△△	◐	○▽	○□	○△	○■	○▲	합계
수익	3,505	1,972	2,314	22	22	6	37	21	6	194	66	11	169	3	8,348
비용	2,085	974	1,219	139	144	104	161	117	52	192	98	38	158	27	5,508
순이익	1,420	998	1,095	△117	△122	△98	△124	△96	△46	2	△32	△27	11	△24	2,840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자산·부채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자산	41,968	43,367	44,326
부채 (부채비율)	3,963 (10.4)	4,072 (10.4)	3,777 (9.3)

주: 납입자본금 2조 3,578억 원: 전액 정부 출자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모범사례 포함)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문책(인원)	주의	통보	통보(모범)
건수	29(9)	5(9)	18	5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계약 및 자산관리 분야

① 한국공항공사는 시·군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업체를 오수처리시설의 주처리공법 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민원회신 업무를 부당 처리

- 공주시 등 9개 시·군은 업체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실적증명서 등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발급
- 제천시와 산청군은 실적증명서 발급이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민원 회신

② 한국공항공사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등 혜택을 부여

㈏ 안전 및 보안 관련 업무 분야

③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는 2016. 1. 25. 제설작업을 하면서 활주로 갓길에 높이 1.5m의 눈더미가 쌓이게 되었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개방하여 항공기엔진 부분이 눈더미에 부딪쳐 주날개 등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

④ 한국공항공사는 방사선원이 포함된 장비의 경우 이동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인데도 위 장비를 13차례 이동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신고하는 등 방사선원 관리업무 소홀

㈐ 기타 분야

⑤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은 밸브박스 덮개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가의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가볍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강도는 2배로 향상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 개선

이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에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문책·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오수처리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① 한국공항공사 ② 장흥군 등 [별표] 기재 9개 시·군

조 치 기 관 ① 한국공항공사 ② 장흥군 등 [별표] 기재 9개 시·군

내 용

1. 사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2014. 6. 18. ♡공항 오수처리시설에 적용할 오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기술제안 참가의향서 작성지침"(이하 "참가의향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공고[2]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 등 13개 공법업체[3]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7. 7. 위 업체 중 참가의향서에 보유공법이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되어 가동 중인 실적을 10건 이상 기재한 ●● 등 7개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지역본부 □팀)에서 실시한 1차 평가 및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같은 해 8. 12. 최고 점수를 받은 ●●을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은 2014. 7. 7. 기술제안서와 함께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특허(특허번호

2) 한국공항공사는 2014. 4. 30.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B)와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업무를 수행하되 주요 업무는 위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약정하여 위 업체가 공법업체 선정관련 공고, 서류접수 등의 실무를 대행

3) 한국공항공사는 공법업체를 하수처리 공법(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발주처에 보유 공법(부속 기자재 포함)을 공급 및 보증하는 업체로 정의

ㄱㅁ호, 2010. 2. 4. 등록, 이하 “신규특허”라 한다)가 적용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2014. 8. 26. 및 9. 4. ●●으로부터 [별표] “적용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발급 및 제출 명세”와 같이 신규특허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실적서류를 제출받는 등 ●●이 보유한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이 10건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같은 해 10. 29. ●●을 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 공사는 2015. 6. 3.부터 같은 해 7. 21. 사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위 공사에 허위의 실적서류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3건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공법업체 선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위 공사는 2015년 9월 ●●과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기술사용 협약서”(이하 “기술사용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6. 4. 21. 서울지방조달청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기자재 구매설치를 수의계약 요청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은 같은 해 5. 30.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835백만여 원)하였다.

한편 장흥군 등 [별표]에 기재된 9개 시·군은 2014. 2. 13.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의 신청을 받아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에 관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적서류의 발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2017. 11. 15.~12. 7.) 결과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신청한 대로 실적서류를 잘못 발급하였고, 위 공사는 ●●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을 공법업체로 선정하는 한편, 허위서류를 제출한 ●●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법적용 확인업무 불철저 및 부정당업체 제재 미조치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공사가 2014. 6. 25. 공고한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법 보유업체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4)]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후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2014. 7. 26. ◆지역본부장 전결)에 따르면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업부서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결과보고"(2014. 8. 12. ◆지역본부장 전결)에 따르면 공법업체로 결정된 ●●에 대하여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 실적이 10건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4)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용량, 준공일자, 적용공법, 기술보유사, 공사기간 등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음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별표]에 기재된 장흥군 등 9개 시·군에 발급신청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 확인서[5] 및 적용공법 확인서[6]의 '적용공법'란에는 공법명, 신기술,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의 신청을 받아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 확인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가 적용공법란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법적용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고, 위 공사는 ●●으로부터 2014. 7. 7.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을, 같은 해 8. 26. 및 9. 4.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으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 및 적용공법 확인서 5건(13개 기관의 총 20건)을 각각 제출받았을 때에는 위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했으며, 위 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했다.

2) 허위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및 검토 등 부적정

위 공사가 2014. 7. 7. ●●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제안서에는 보유공법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된 사례로 ㄱ 하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규특허가 적용된 사례로 [별표]와 같이 ㄱ 하수처리시설 등 3개 처리시설

5) 신규특허가 하·폐수 처리시설에 적용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서류
6) 하·폐수 처리시설에 공법보유사의 특허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서류

(일련번호 1, 2, 10번)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5.~12. 7.) 중 확인한 결과 장흥군은 2014. 4. 2. ●●으로부터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장흥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아 이를 검토·처리하면서 위 실적증명서의 적용공법란에는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7] 및 검증[8] 제35호 외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신규특허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10. ●●의 신청대로 위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공주시 및 제천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이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규특허는 2010. 2. 4. 등록되었으나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별표]와 같이 처리시설이 2002년 9월 또는 2008년 4월에 착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는 신규특허의 등록일과 위 처리시설의 착공일을 비교하면 3개 처리시설 중 2개 처리시설(ㄱ 하수, ㄴ 하수)에는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1개 처리시설(ㄷ 폐수)도 공주시에 문의 등을 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2009. 7. 13.)이 신규특허가 등록(2010. 2. 4.)되기 전에 이루어져 이 또한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사업부서는 2014. 7.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1차 평가)를 하면서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 허위의

7) 속도가변 부유식 표면포기장치와 에어벤트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2007. 10. 18. 유효기간 만료)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을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업체로 상정하였고, 1차 평가 및 2014. 8. 7. 개최된 위 위원회의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이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12. ●●을 공법업체로 결정하였다.

3) 허위의 공법적용 확인서 등 발급 및 검토 등 부적정

위 공사는 ●●으로부터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과 관련하여 2014. 8. 26. 12건의 공법적용 확인서를, 같은 해 9. 4. 5건의 적용공법 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 위 공사에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 및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확인서 17건(처리시설 14개)을 확인한 결과 [별표]와 같이 2014. 8. 26. 제출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12개 처리시설) 중 8건[9](8개 처리시설, 일련번호 1~8번)의 경우 해당 처리시설은 신규특허 등록 이전에 착공되어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2-가-2)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장흥군에 공법적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적용공법란에 ㄱ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신규특허를 허위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장흥군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8월경(날짜 모름) ●●이 신청한 대로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등 7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8건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4. 9. 4. ●이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5건(5개 처리시설, [별표] 일련번호 1~3, 9, 10번)의 경우 허위로 발급받은 공법적용 확인서 8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9) 정상적으로 발급된 ㄹ 폐수처리시설, ㅂ 폐수처리시설, ㅅ 폐수처리시설(2단계), ㅈ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제외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신청한 대로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5건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법적용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0. 29. ●●을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은 공법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가-2)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별표]에 기재된 장흥군 등 9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 공법적용 확인서 8건,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계 16건의 허위서류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는데도 공법업체로 선정되었고, 2017. 12. 7. 현재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나.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공법보유사는 공법 적용실적, 공법이 적용된 하·폐수처리장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유지관리비 등을 기술제안서에 기재하고 이와 함께 적용공법, 연간 유지관리비, 기간별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등이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후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2014. 7. 26.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에 따르면 최근 1년(2013. 1. 1. 이후) 동안 방류수질기준 초과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1건 이상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접수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은 해당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하여 공주시, 장흥군 및 제천시로부터 발급받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기술제안서의 주요 내용[10]을 작성한 후 2014. 7. 7. 기술제안서 및 3건의 실적증명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고, 위 공사는 이에 대하여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3건 이상 제출 시 국내 적용실적으로 최대 2점(1건 1.2점, 2건 1.6점)을 주도록 배점기준을 정한 공법사의 적정성[11]항목과 더불어 수질관리의 적정성, 가동의 적정성, 공법의 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한 1·2차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0. 29. ●●을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선정(적용공법: 신규특허)하였다.

한편, 위 공사는 2015. 6. 3. ◎◎로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 공주시 ㄷ 폐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공주시 ㄷ, 장흥군 ㄱ, 제천시 ㄴ, 양구군 ㅊ[12], 청원군 ㅅ[13])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등 같은 해 6. 3.부터 같은 해 7. 21. 사이에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3건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는 ㄷ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규특허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으로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10) 처리성능 관련 자료, 수온변동에 대한 운영계획, 국내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적용 하수처리장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등
11) 4점 배정(경영상태 2점,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의 국내 적용실적 2점)
12) ●●은 위 처리시설의 실적서류는 위 공사에 제출하지 않았음
13) ●●은 1단계 ㅅ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2단계 ㅅ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공법적용 확인서를 각각 위 공사에 제출하였음

실적증명서를 2012년 2월부터 2015. 5. 18. 현재까지 공주시가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공주시의 문서(▣과-20379, 2015. 5. 18.), ㄱ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가 적용되었다고 장흥군 ▤사업소가 ●●에 통보한 문서(▤사업소-6479, 2010. 8. 9.)와 공법 확인의 근거(위 처리시설의 실시설계 보고서), 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다고 제천시 ▨사업소가 ◎◎에 통보한 민원회신문서(2015. 4. 30.)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민원의 첨부서류는 3개 처리시설(ㄷ 폐수, ㄱ 하수, ㄴ 하수) 모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은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적용공법인 신규특허가 적용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해당되고, 위 3건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기술제안서에 기재한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등 주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공사는 제기된 3건의 민원에 대하여 위 공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사실대로 ◎◎에 민원회신 하여야 하고, 공주시, 장흥군 및 제천시에 민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법업체로 선정된 ●●에 대하여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2)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 D은 2009. 2. 2.부터 2017. 12. 7. 현재까지, 위 공사 ■본부 ○TF 팀장 E은 2012. 1. 16.부터 2017. 5. 29.까지, 위 공사 △지사 △시설팀장 F은 2009. 1. 2.부터 2015. 12. 23.까지 각각 위 공사 ◆지역본부 □팀 과

장, 차장 및 팀장의 직위에서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 제기한 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 및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D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6. 3. ●●이 공주시 ㄷ 폐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위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시에 유선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2015. 6. 5. 공주시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ㄷ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공주시가 발급하였으나 위 실적증명서는 잘못[14]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과-22938)를 모사전송기(FAX)를 통해 통보받음으로써 ●●이 공주시로부터 2014. 2. 13.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15]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위 민원에 첨부된 장흥군 目사업소가 ●●에 공법 확인을 통보한 문서에는 ㄱ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아닌 환경부 신기술[16]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처리시설에 ●●의 환경부 신기술만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실시설계 보고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이 신규특허와 관련이

14) ㄷ 폐수처리시설에는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고, 2012. 2. 14. 등록이 무효된 특허 제ㄱㅇ호가 적용됨
15)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2014년 8월 발급받아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16)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검증 제35호(2007. 10. 18. 유효기간 만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장흥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장흥군이 발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는 장흥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2015. 6. 8. 제천시로부터 ㄴ 하수처리시설 준공(2004년 9월)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2013년 5월 이후부터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허위[17]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18]받은 바 있으나 적용공법이 먼저 선정된 후 하수처리시설이 착공 및 준공[19](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포함)되는데 위 문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20]되어 있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의 적용공법이 변경되었다는 위 문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민원에 첨부된 제천시가 ◎◎에 통보한 민원회신문서(2015. 4. 30.)에는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한 달여 사이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문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공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였는데도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21]하여 제천시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

17) ●●은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ㄴ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2013년 5월경)하였고, 공기차단막이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천시는 ●●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위 처리시설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251호가 적용되었음(구체적인 내용은 "처리안 2번" 참조)

18) 제천시 ▨사업소에 근무하던 H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실적서류 발급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나 위 공사에서 위 문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문서의 수신처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였다고 진술

19) 위 공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에 적용된 공법은 준공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 ●●이 제천시로부터 신규특허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아 2014. 7. 7.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자가 2004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제천시가 한국공항공사에 2015. 6. 8. 시행한 문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이 2004. 9.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았음

21) 제천시는 한국공항공사에 2015. 6. 8. 시행한 위 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2. ㄴ 하수처리시설에 2013년 5월 이후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5. 6. 10.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여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우리 공사에서 정한 공법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한 후 차장 E, □팀장 F 및 ✧단장 G(2015. 12. 31. 퇴직)의 결재를 받아 ◎◎에 민원회신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 6. 30. 및 7. 21.[22] 또다시 ◎◎로부터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법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접수·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이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확인받기 위해 산청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ㅍ·ㅎ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와 관련하여 2015. 6. 18. 산청군으로부터 ㅍ·ㅎ 하수처리시설 준공(2011. 11. 20.) 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2013년 4월 이후부터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허위[23]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24]받은 바 있으나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새로이 적용되었는데도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았고, 위 내용은 준공된지 1년 4개월여 만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어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산청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용의 “ㄴ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다시 시행하였음

22) 2015. 7. 21.자 민원의 경우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2015. 7. 22. 한국공항공사에 민원을 이송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임

23) ●●은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2013년 4월경)하였고, 공기차단막이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산청군은 ●●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위 처리시설에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음

24) 산청군 ㅌ사업소에 근무하던 Q는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실적서류 발급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나 ◎◎로부터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시행해달라고 구두로 요청받아 위 문서를 위 공사에 시행하였다고 진술

그후 위 사람은 2015. 7. 6. 및 같은 해 7. 24. “참가자격 선정 관련 제출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우리 공사 심의 및 평가기준에 의거 이상 없이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신문과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은 우리 공사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신문을 각각 기안하여 E, F 및 G의 결재를 받아 ◎◎에 민원회신을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주시에서 단순히 적용된 공법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위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공법업체 선정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6. 4. 20. ●●으로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기자재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 요구서를 기안한 후 차장 E, 팀장 J, ✧단장 K 및 본부장 L의 결재를 받아 위 공사 ◆지역본부 재무관리팀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재무관리팀은 같은 해 4. 21. 서울지방조달청에 공법기자재 구매설치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같은 해 5. 30. ●●과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은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없이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특혜를 얻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회신되는 등으로 공공기관 민원조사·처리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나) E의 경우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 공주시가 ㄷ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문서, 장흥군이 ㄱ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통보한 문서 및 제천시가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회신한 민원회신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D이 ◎◎의 3회에 걸친 민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하여 올리자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D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25]하였고,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이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중대한 허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해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여부를 직접 검토하거나 D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2016. 4. 20. D이 기안하여 올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기자재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 요구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2-나-2)-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5) 위 사람은 2015. 7. 6. ◎◎에 회신한 문서에는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7. 7. 위 공사 감사실에 ◎◎의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회신하는 문서에는 결재를 하였음

다) F의 경우

(1) 민원업무 부당 처리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 공주시가 ㄷ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문서, 장흥군이 ㄱ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통보한 문서 및 제천시가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회신한 민원회신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D이 ◎◎의 3회에 걸친 민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하여 올리자 공법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제출한 실적서류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D, E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고,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을 충분히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해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여부를 직접 검토하거나 D, E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2-나-2)-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 사람은 “2-나-2)-다)-(1)항”의 내용과 같이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 “직접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 문서를 기안하는 등 ●●과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1·2차 처리공법[26]과 별도로 3차 처리공법[27](총인처리공법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2014. 7. 7.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은 1·2차 처리 공법업체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이하 “▲▲”이라 한다)은 3차 처리 공법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이 2015. 9. 7. 기안한 “직접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 문서 및 위 문서의 붙임자료인 “주처리공법 기술사용 협약서(안)” 제9조 등에 따르면 ▲▲은 위 3차 처리와 관련하여 총인처리설비와 관련된 신기술 및 특허를 위 공사에 공급하는 기술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이 향후 위 공사와 공법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은 총인처리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일

26) 1차 처리(오수 중에 부유하는 물질이나 바닥으로 가라앉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와 2차 처리(오수 중에 녹아 있는 유기물 및 1차 처리에서 처리되지 않는 유기성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공법을 의미

27) 3차 처리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조합하여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이외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의 처리방법을 의미

체를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은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의 결정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회신 및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업무는 위 사람의 직무에 해당되고, ▲▲의 대표이사인 M은 위 사람의 동생으로 M과 위 사람은 형제관계이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람의 직무인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회신 및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 공사「임직원 행동강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년 5월 또는 6월경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28] 되었고, 이러한 경우 위 공사「임직원 행동강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자재 일부만을 ●●에 단순히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되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다.

그러고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은 채 "2-나-2)-다)-(1)항"의 내용과 같이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3차례에 걸쳐 검토 및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 공법업체의 기자재는 공법보유사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선 구매[터빈 등 설비 1,300백만 원, 총인처리설비 420백만 원, 합계 1,720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직접

28) 위 사람은 2014년 7월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민원을 제기하던 2015년 5월 또는 6월경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산업환경설비분야)” 문서를 기안하여 ✧단장,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 기술사용 협약서가 체결되게 하였으며, ▲▲은 위 협약서 및 2016. 5. 30. ●●과 서울지방조달청 간 체결한 수의계약을 근거로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407백만여 원 상당[29]의 총인처리설비를 ●●을 통해 위 공사에 납품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된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하였다.

※ 참고사항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D은 “2-가-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제출한 3건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하·폐수 처리시설의 착공일자가 신규특허의 등록일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실적증명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8. 12. ●●을 공법업체로 결정하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결과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E 및 F도 실적증명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중간결재하여 ●●이 공법업체로 결정되게 하였다.

그리고 D은 “2-가-3)항”의 내용과 같이 ●●은 보유공법이 국내 처리시설에 적용되어 가동 중인 실적이 26건이라고 기재한 참가의향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신규특허가 적용된 실적은 ㄹ 폐수처리시설 등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29) 계약요청 금액(423백만 원)에 낙찰률(96.38%)을 감안하여 산출한 추정금액(부가가치세 제외)

[30]에 불과한데도 ●●이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이 10건 이상인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0. 29. ●●을 공법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결과 수정변경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E 및 F 또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 문서에 그대로 중간결재하여 ●●이 공법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F은 2014년 7월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위 공사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첨부서류에 ▲▲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 성능보증서(총인처리공법), 자재성능 보증서(총인처리공법), 기술이전계획서(총인처리공법) 및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31]이 첨부되어 있어 자신의 동생인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 7. 공법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심의위원회[32]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 확인업무도 수행하는 등 공법업체 선정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주장 및 판단

D·E·F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참가의향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30) ㄹ 폐수처리시설, ㅂ 폐수처리시설, ㅅ 폐수처리시설(2단계), ㅈ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31) 음성군 ㄱㄱ공공하수장 고도처리시설, 양평군 ㄱㄴ 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청주시 ㄱㄷ 하수처리시설
32) "한국공항공사 구매계약 등 외부평가위원 선정지침"(2012. 10. 4. 지침 제98호)에 따라 공법심의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팀장이 위원장(위원회를 주관하고 평가를 총괄하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이 되고,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작성지침에 특허의 국내 적용실적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보유하였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 경우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을 10건 이상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 공법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가 2014. 7. 26.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에 공법업체 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유하던 환경부 신기술은 2001년에 등록되어 2007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고, 설령 위 사람들이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을 인정하여 ●●을 이 건 공법업체로 선정하더라도 신기술이 적용된 공법기자재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의 체결대상이 되는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은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에 2014. 8. 13. 신규특허의 정상가동 실적 10건 이상을, 같은 해 8. 29.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유효기간이 만

료된 신기술의 국내적용 실적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2-가항”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문서를 작성·발급할 때 철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2-가항”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이 제출한 실적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2-나항”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특허적용 실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에 회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던 점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적용실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이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를 제천시 및 산청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2014. 7. 7.부터 같은 해 9. 4. 사이)한 이후인 2015. 6. 8. 및 6. 18. 제천시 및 산청군으로부터 ㄴ 및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각각 제출받았는데 위 문서에 2013년 4월 또는 5월 이후 신규특허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에 실적서류를 발급한 총 13개 기관[33](실적서류 20건[34]) 중 공주시, 제천시 및 산청군을 제외한 장흥군 등 10개 기관[35]으로

33)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실적서류를 발급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정상적으로 실적서류를 발급한 4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영광군, 청주시, 여주시)

34) 정상적으로 발급된 ㄹ 폐수처리시설, ㅂ 폐수처리시설, ㅅ 폐수처리시설(2단계), ㅈ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포함

부터는 적용공법을 정정하는 내용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는 공주시가 발급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천시 등 2개 시·군(제천시, 산청군)이 시행한 문서에는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는데도 위 시·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화천군과 창원시의 경우 2014년 8월 공법적용 확인서 등의 실적서류(화천군은 공법적용 확인서 1건, 창원시는 적용공법 확인서 1건)를 ●●에 잘못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시행(화천군의 경우 2015. 7. 10. 시행[36], 창원시의 경우 2015. 7. 3. 인지하여 7. 24. 시행[37])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2015. 7. 21. ◎◎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회신일: 2015. 7. 24.)을 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하였다면 위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시·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고서도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 E, F의 행위는 위 공사「취업규칙」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 공사「인사규정」제52조 제1호의

35) 장흥군, 파주시, 정선군, 화천군, 화성시,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영광군, 청주시, 여주시

36) 화천군은 2015년 7월경(날짜모름) ●●에 공법적용 확인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7. 10. "화천군 사창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공법적용 확인서 관련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 등에 시행하였음

37) 창원시는 2015. 7. 3. 선일이 위 관서에 제기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에 적용공법 확인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7. 24.「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용공법 확인서 정정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 등에 시행하였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F은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보조공법사(3차 처리)로 선정된 ▲▲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동생인데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고 민원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위 공사「인사규정 시행세칙」제68조 제1항 관련 [별표 12]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1.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①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 E 및 F을 한국공항공사「인사규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D·E: 경징계 이상, F: 정직)하고(**문책**)

②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선정된 ●●에 대해 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장흥군 등 [별표]에 기재된 9개 시장과 군수**는 앞으로 적용된 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공법적용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적용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발급 및 제출 명세

(단위: ㎥/일)

일련번호	발급기관	처리시설명	시설용량(준공시기)	문서발급 관련					착공시기
				신청시기	발급시기	발급문서명[1]	잘못 기재된 특허	실제 적용된 특허 등[2]	
1	장흥군	ㄱ 하수	4,400 ('11년 3월)	'14. 4. 2.	'14년 8월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8년 4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2	제천시	ㄴ 하수	1,200 ('04년 9월)	'14. 7. 3.	'14. 7. 4.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251호[3]	'02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3	산청군	ㅍ·ㅎ 하수	1,800 ('11년 12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9년 2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4	파주시	- 하수	2,100 ('03년 8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1년 5월
5	정선군	- 하수	1,200 ('07년 12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제251호	'04년 8월
6	화천군	- 하수	1,600 ('08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제251호	'06년 12월
7	화성시	- 폐수	3,000 ('05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04년 1월
8		- 폐수	2,500 ('05년 4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04년 9월
9	창원시	- 폐수	2,000 ('11년 7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07년 8월
10	공주시	ㄷ 폐수	1,700 ('12년 9월)	'14년 2월	'14. 2. 13.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10년 6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9개 기관의 10개 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 공법적용 확인서 8건,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16건이 잘못 발급·제출됨									

주: 1. 발급문서명에 정상가동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은 공법적용 확인서, 적용공법은 적용공법 확인서를 의미함

2. 제33호, 제35호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를, 제251호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251호(유효기간: 2005. 9. 24.까지)를 의미함

3. 제천시는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하여 실적서류를 발급하였으나 위 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고도처리공법 비교자료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제251호가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음

4. ㄹ 폐수처리시설(한국산업단지공단 발급), ㅂ 폐수처리시설(영광군 발급), ㅅ 폐수처리시설(2단계, 청주시 발급), ㅈ 하수처리시설(여주시 발급)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별표]에 미기재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제천시

조 치 기 관 제천시

내 용

1. 사건 개요

제천시는 2015. 6. 1.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ㄴ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6. 9. 민원회신을 하는 등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확인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ㄴ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관련하여 위 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고도처리공법 비교자료에 따르면 위 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 보유하던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251호[38](유효기간: 2000. 9. 25.~2005. 9. 24.)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

38) 부유식 가변 표면포기장치와 에어벤트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기술

재되어 있다.

또한 ●●은 위 신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2. 4. “부유식 표면 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특허(특허번호 ㄱㅁ호, 이하 “신규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으나 신규특허는 ㄴ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준공시기 2004년 9월)된 이후에 등록된 것으로서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관서는 위 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술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개량 등의 공사를 시행한 적도 없는 등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관서는 ㄴ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고도처리공법 비교자료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된 사실에 따라 민원회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민원회신을 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3.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제천시 ♣과 H은 2011. 1. 1.부터 2015. 8. 1.까지 위 관서 ▨사업소에서 공법 적용 확인서 등의 실적서류 발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5. 6. 1. 및 6. 11. ◎◎로부터 ㄴ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각각 접수하여 이를 검토·회신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6. 1. ◎◎로부터 ㄴ 하수처리시설에 ●●의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허위로 발급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의 취소통보 문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여 다른 공법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지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면서 위 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법 비교자료 등 관련 서류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같은 해 6. 8.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부품인 공기차단막[39]을 설치[40]한 2013년 5월부터는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규특허가 2013년 5월부터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ㄴ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기안하였고, ♧팀장 N 및 ▨사업소장 P(2017. 6. 30. 퇴직)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각 검토 및 결재하여 잘못된 내용의 위 문서를 전국 시·군·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41]에 시행[42]되게 하였으며, 2015. 6. 9. ◎◎에 위 문서와 같은 내용의 민원회신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 6. 11. ◎◎로부터 ㄴ 하수처리시설에 2013년 5월 이후부터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규특허의 청구항[43]을 확인하여 신규특허가 위 처리시설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또다시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민원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5. 6. 18. ㄴ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인 공기차단막이 설치된 2013년 5월부터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

39) 위 부품은 신규특허 청구항 7항의 필수 구성요소(부유물 배제편, 스컴 차단막, 공기차단막 등) 중 하나임

40) 위 사람은 2013년 5월 당시 ㄴ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부품인 공기차단막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위 사람에게 제안하자 구두로 설치를 허락하였다고 진술

41) 위 사람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나 위 공사에서 위 문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신처에 한국공항공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

42) 제천시는 2015. 6. 8. 시행한 위 문서와 관련하여 ◎◎이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해 7. 2. ㄴ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ㄴ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시행하였음

43)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청구항임

안하였고, ♧팀장 N 및 ▨사업소장 P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각 검토 및 결재하여 ◎◎에 잘못된 내용의 민원회신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위 사람이 2015. 6. 8. 시행한 문서를 접수한 후 2013년 5월부터 신규특허가 ㄴ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위 문서내용을 근거로 ●●이 제천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2014. 7. 7.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2014. 8. 26.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44] 및 2014. 9. 4.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45]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은 2016. 5. 30. 서울지방조달청과 "오수처리시설 신축 주처리 공법 기자재 구매설치"를 수의계약(계약금액 1,835백만 원)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2013년 5월경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ㄴ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공기차단막은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리사의 법률검토서[46]를 제출하였는데 H은 법률검토서에 ●●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구성요소를 설치한 시점부터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

44) 환경부에서 작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따르면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45)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 공법보유사의 특허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발급받는 확인서를 의미함

46) ××사무소의 AL 변리사는 "●●의 신규특허의 청구항 내용의 일부가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기자재에 적용되었더라도 기존과 동등이상의 성능 및 등록특허에서 얻고자 하는 동등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특허의 목적인 기존 장차의 성능개선이라는 출원취지에 입각하여 해당 등록특허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한 법률검토서를 2015. 6. 16. ●●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특허법」 제97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47]하였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독립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ㄴ 하수처리시설에는 신규특허의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48]의 필수 구성요소[49]에 해당하는 터보 프로펠러[50] 및 프로펠러 하우징[51]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청구항 1항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규특허의 종속청구항인 청구항 7항[52]은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인데

47)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48)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에 있어서,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한 하수 또는 폐수를 정화하는 반응조에는 그 하부에 프로펠러 하우징을 설치하고, 또 터빈과 감속모터 및 기어의 축으로 구성되고, 하수 또는 폐수의 표면에서 이들을 급속 회전시켜 선회와류를 형성하는 포기공정과 완속 회전하여 비포기 혼합공정을 수행하는 부유식 가변 표면 포기장치를 설치하며, 또 터빈의 내부를 관통하여 기어의 축과 플랜지로 연결한 회전축의 단부에 터보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상기 터보 프로펠러는 회전 유도날개를 1개 이상 가지면서, 꼭짓점을 중심으로 상기 프로펠러 하우징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회전 시 프로펠러 하우징 내측의 삽입구에서 상승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 또는 폐수를 포기장치에서 순환시키고, 상기 포기장치를 하수 또는 폐수에서 플로터로 부유토록 지지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49) 반응조, 프로펠러 하우징, 터빈, 터보 프로펠러 등

50) Turbo Propeller, 반응조 저면부의 미생물을 포함한 슬러지(찌꺼기)를 상부로 강제 순환하여 반응조 내 선회와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터빈의 하부에 장착하는 부품임

51) Propeller Housing, 선회와류로 터빈과 더불어 저면부의 미생물 및 슬러지를 더욱 강력한 선회와류로 순환함으로써 반응조 전체의 완전혼합을 일으키고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달성하여 우수한 하수 또는 폐수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응조의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임

52) 청구항 1항의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에 폐수를 정화한 후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배출장치는 그 단부에 부유물 배제편이 설치되면서 유입구 내부에 스컴 차단막을 부착하고, 유입구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이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항 7항[53] 또한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항"의 내용과 같이 신규특허가 ㄴ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데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 등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제천시는 공법업체가 의뢰한 변리사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서류의 검증방법 등을 개선하여 각 내용을 자세히 표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H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곡관부)의 공기배출구에 공기의 역유입을 방지하는 역유입 공기차단막을 갖는 단방향 에어벤트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53) 특허법원은 다항제 아래에서 각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청구항마다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므로 특허요건도 청구항 별로 따로 구비하여야 하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부가 또는 한정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인 것으로 판시(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한 바 있고, 신규특허의 종속청구항인 청구항 7항은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의 필수 구성요소에 7항에 기재된 새로운 필수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ㄴ하수처리시설에 청구항 1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청구항 7항에 기재된 새로운 필수 구성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청구항 7항이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H을「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고(**징계**)

② 앞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 ▨사업소 ♧팀장 N(현 ※과)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산청군

조 치 기 관 산청군

내 용

1. 사건 개요

산청군은 2015. 6. 5.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해 6. 8. 민원회신을 하는 등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 적용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관련하여 위 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2권역) 실시설계 (보완)보고서"(2008년 8월 작성)에 따르면 위 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 보유하던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54] 및 검증[55] 제35호

54) 속도가변 부유식 표면포기장치와 에어벤트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

5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면 기술검증을 할

(유효기간 2001. 10. 19.~2007. 10. 18.)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은 신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2. 4.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특허(특허번호 ㄱㅁ호, 이하 “신규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으나 신규특허는 ㅍ·ㅎ 하수처리시설이 착공(착공시기 2009년 2월)된 이후에 등록된 것으로서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관서는 위 처리시설이 준공(준공시기 2011년 12월)된 이후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술협약을 체결하거나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개량 등의 공사를 시행한 적도 없는 등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관서는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시설계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된 사실에 따라 민원회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민원회신을 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3.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산청군 ♠과 Q는 2012. 8. 13.부터 2015. 6. 30.까지 위 관서 ▤사업소에서 ●●에 공법적용 확인서 등의 실적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5. 6. 5.부터 6. 17. 사이에 ◎◎로부터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민원 3건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회신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6. 5. 및 6. 10. ◎◎로부터 위 처리시설에 ●●의 신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특허가 적용되었는지 확인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위 처리시설의 실시설계 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같은 해 6. 8. 및 6. 17.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부품인 공기차단막[56]을 설치[57]한 2013년 4월부터는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규특허가 2013년부터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 문서를 각각 기안하였고, 하수도담당 R 및 ㅂ사업소장 S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각 검토 및 결재하여 ◎◎에 잘못된 내용의 민원회신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 6. 17. ◎◎이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의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산청군이 위 처리시설의 공법적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문서로 시행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자 같은 해 6. 18. 신규특허는 2013년 4월부터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잘못된 내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기안하였고, 하수도담당 R의 검토 및 ㅂ사업소장 S의 결재를 받아 위 문서를 전국 시·군·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공항공사에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위 사람이 2015. 6. 18. 시행한 문서를 접수한 후 2013년 4월부터 신규특허가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위 문서내용을 근거로

56) 위 부품은 신규특허 청구항 7항의 필수 구성요소(부유물 배제편, 스컴 차단막, 공기차단막 등) 중 하나임
57) 위 사람은 2013년 4월 당시 신안·단성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업체가 위 사람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규특허의 부품인 공기차단막을 위 처리시설에 설치하였고, 선일이 제기한 위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이 산청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2014. 8. 26.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58] 및 2014. 9. 4.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59]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은 2016. 5. 30. 서울지방조달청과 "오수처리시설 신축 주처리 공법 기자재 구매설치"를 수의계약(계약금액 1,835백만 원)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얻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2013년 4월경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공기차단막은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리사의 법률검토서[60]를 제출하였는데 Q는 법률검토서에 ●●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의 구성요소를 설치한 시점부터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 제97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청구항[61]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

58) 환경부에서 작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제안서 평가작성요령"에 따르면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음

59)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 공법보유사의 특허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발급받는 확인서를 의미함

60) ××사무소의 AL 변리사는 "●●의 신규특허의 청구항 내용의 일부가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기자재에적용되었더라도 기존과 동등이상의 성능 및 등록특허에서 얻고자 하는 동등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특허의 목적인 기존 장차의 성능개선이라는 출원취지에 입각하여 해당 등록특허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한 법률검토서를 2015. 6. 16. ●●에 제출하였음

61)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청구항임

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62]하였으며,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독립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ㅍ·ㅎ 하수처리시설에는 신규특허의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63]의 필수 구성요소[64]에 해당하는 터보 프로펠러[65] 및 프로펠러 하우징[66]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청구항 1항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규특허의 종속청구항인 청구항 7항[67]은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구체화한 것인데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이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항 7항[68] 또한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

6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63)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에 있어서,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한 하수 또는 폐수를 정화하는 반응조에는 그 하부에 프로펠러 하우징을 설치하고, 또 터빈과 감속모터 및 기어의 축으로 구성되고, 하수 또는 폐수의 표면에서 이들을 급속 회전시켜 선회 와류를 형성하는 포기공정과 완속 회전하여 비포기 혼합공정을 수행하는 부유식 가변 표면 포기장치를 설치하며, 또 터빈의 내부를 관통하여 기어의 축과 플랜지로 연결한 회전축의 단부에 터보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상기 터보 프로펠러는 회전 유도날개를 1개 이상 가지면서, 꼭짓점을 중심으로 상기 프로펠러 하우징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회전시 프로펠러 하우징 내측의 삽입구에서 상승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 또는 폐수를 포기장치에서 순환시키고, 상기 포기장치를 하수 또는 폐수 상에서 플로터로 부유토록 지지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64) 반응조, 프로펠러 하우징, 터빈, 터보 프로펠러 등

65) Turbo Propeller, 반응조 저면부의 미생물을 포함한 슬러지(찌꺼기)를 상부로 강제 순환하여 반응조 내 선회와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터빈의 하부에 장착하는 부품임

66) Propeller Housing, 선회와류로 터빈과 더불어 저면부의 미생물 및 슬러지를 더욱 강력한 선회와류로 순환함으로써 반응조 전체의 완전혼합을 일으키고 높은 산소전달효율을 달성하여 우수한 하수 또는 폐수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응조의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임

67) 청구항 1의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에 폐수를 정화한 후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배출장치는 그 단부에 부유물 배제편이 설치되면서 유입구 내부에 스컴 차단막을 부착하고, 유입구(곡관부)의 공기배출구에 공기의 역유입을 방지하는 역유입 공기차단막을 갖는 단방향 에어벤트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SBR 공법에 의한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68) 특허법원은 다항제 아래에서 각 청구항은 독립항이든 종속항이든 상호 독립되어 있어 청구항마다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므로 특허요건도 청구항 별로 따로 구비하여야 하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부가 또는 한정하여 구체화한 청구항인 것으로 판시(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한 바 있고, 신규특허의 종속청

허가 적용되었다는 ●●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항”의 내용과 같이 신규특허가 ㅍ·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데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 등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산청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특허업무 경험이 없어 잘못된 내용의 실적서류 등을 발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Q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산청군수**는

① 공법적용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Q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고(**징계**)

② 앞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업무를 철저히 하며

구항인 청구항 7항은 독립청구항인 청구항 1항의 필수 구성요소에 7항에 기재된 새로운 필수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안·단성 하수처리시설에 청구항 1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청구항 7항에 기재된 새로운 필수 구성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청구항 7항이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문책·주의요구

제 목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사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2010. 10. 27.「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위 공사와 계약(협약)하는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항시설 위탁관리 SLA(서비스수준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69]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2010. 12. 24. 서비스수준협약(서비스수준과 서비스수준협약을 이하 "SLA"라 한다[70])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계약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B" 등급 이상이면 2년간 추가로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내용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용역 수탁기업에 대해 계약기간(3년)과 수의(연장)계약기간(2년) 동안의 성과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약금액과 별도로 반기별 계약금액 대비 0~6%[71]만큼을 성과보상금(연 2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SLA)

69) 일반 공공부문 간에 서비스 및 시설 유지·보수·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합의한 후, 사전에 계약된 위탁기업(모기업)의 지원하에 수탁기업(협력사)이 평가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위탁기업이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현금보상, 장기계약 등)를 수탁기업(협력사)에 제공하는 합의서(협약서)

70) 한국공항공사는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과 서비스수준(Service Level)을 SLA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71) S: 4%(최초 3%였다가 현재 4%로 변경됨), A+: 3%, A: 2%, B+: 1.5%, B: 0.5%, C: 성과보상금/페널티 없음, D: 서비스수준 개선 및 보완계획서 제출, 그리고 시설, 운영, 보안 분야별 우수업체를 1개씩 선정하여 추가로 2% 지급

평가기준」이 포함된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평가(SLA 제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2012. 12. 13.부터 2012. 12. 20. 사이에 [표 1]과 같이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 등 4건의 용역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대표이사 T) 등 4개 업체와 각각 3년(계약기간: 2013. 1. 1.~2015. 12. 31.)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근거로 2015. 12. 30.부터 2015. 12. 31. 사이에 기존 용역 수탁업체와 수의(연장)계약(계약기간: 2016. 1. 1.~2017. 12. 31.)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표 1] 수의(연장)계약 체결 및 성과보상금 지급 명세

(금액 단위: 천 원)

담당부서	용역명	업체명	대표	’16~’17년 계약금액	’13~’17년 상반기 성과보상금	중소·중견기업 미해당 사유
◆지역본부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T	4,433,439	138,252	대기업
	♡공항 하이드랜트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U	895,931	17,44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항 통신시설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V	4,439,671	180,95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사	◐공항 주차, 청소, 영접, 조류퇴치 용역	▶▶군인회	W	488,985	16,941	비영리법인
합계				10,256,955	353,586	-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표 1]과 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공유제를 근거로 ▼▼주식회사에 용역계약금액 외에 138,252천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 4개 업체에 총 353,586천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중소·중견기업[72]에 해당하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위·수탁기업 간에

72) 2006. 6.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수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업 등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 지식경제부가 2012. 4. 20. 제정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5호) 제2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73](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도입기업[74]으로 확인받은 자는 성과공유과제로 적용할 용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용역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용역을 종합관리시스템[75]에 등록하며, 위 재단은 위 협약이 성과가 공유되는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항시설 위탁관리 SLA 운영기준」 제3조, 제8조, 제15조 및 [별표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3. 8.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

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0. 12. 29. 구 지식경제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 지정

74)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위탁기업

75) 도입기업의 확인,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의 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

“SLA 운영업무 절차”에 따르면 위탁관리용역 총괄팀[76]은 SLA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정기평가[77]결과와 최초 계약 후 3년이 만료되는 용역의 3년간의 평가결과를 평균한 SLA 종합평가(연장심사)[78]결과를 산출하여 SLA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후 정기평가결과와 SLA 종합평가결과를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모든 용역 수탁기업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탁기업과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2012. 9. 25. 위 재단으로부터 수탁기업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79]받았으므로 중소·중견기업에는 위 성과공유제를 적용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76) 당초 구 운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 계약관리팀에서 2012. 2. 1. 구 마케팅운영본부 운영보안실 상생경영팀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고, 2013. 12. 26. 구 마케팅본부 운영보안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 6. 10. 운영본부 여객지원실 ✿팀으로 명칭 변경

77)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

78)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함

79) 한국공항공사는 2012. 9. 3. 위 재단에 2010. 12. 24.에 도입한 위 SLA 제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2012. 9. 25. 도입기업으로 확인받았고, 2013년 14건의 용역에 대해 수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위 14건의 용역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과제로 등록되지 않은 용역의 경우 위 재단으로부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의(연장)계약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SLA 심의위원회로부터 수의(연장)계약 대상으로 승인받은 후 위 용역에 대해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모든 용역 수탁기업에 용역계약 체결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

한국공항공사 ⧓본부 ⊖실 ✿팀(구 ⧑본부 ⊗실 ✡팀)[80] 대리 X은 2015. 1. 21.부터 현재까지, ◆지역본부 ⧖단 ✦팀 차장 Y은 2015. 1. 21.부터 2017. 1. 18.까지 각각 위 공사 위 팀에서 SLA 평가 등 SLA 성과공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X의 경우

위 사람은 SLA 평가 등 업무담당자로서 2015. 3. 2. “SLA 성과공유과제 등록요청”(⊗실-1149)[81] 문서를 기안하여 차장 Y, 팀장 Z, 실장 AA의 결재를 받아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고, 위 문서에 수의계약용 확인서 미발급 시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본인이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성과공유과제로 등록되지 않는 등

80) 2016. 6. 10. ✡팀에서 ✿팀으로 명칭이 변경됨
81) 2015. 1. 2.에도 “공항시설 위탁관리 SLA 운영 및 평가기준 개선 알림”(운영보안실-17)을 통해 동일 내용 통보

으로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X은 2015년 6월경 ♥팀[82] 과장 AB로부터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위 4건의 용역을 성과공유과제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단에 등록신청[83]했으나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용역은 수탁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니어서 성과공유과제 등록이 반려되었다고 들었기[84] 때문에 위 3건의 용역이 성과공유과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X은 위 3건의 용역이 성과공유과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제외하지 않은채 2015. 10. 26. 사업관리부서에 2016년도 수의(연장)계약 대상 용역을 선정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SLA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심사대상 14건의 용역에 위 3건의 용역을 포함시킨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계획 알림"[85](⊗실-6043) 문서를 기안하여 차장 Y, 실장 AA의 결재를 받아 사업관리부서에 시행하였다.

그 후 X은 2015. 11. 24. 위 14건의 용역에 대해 3년간의 SLA 평가를 종합한 결과 위 3건의 용역이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B" 등급 이상에 해당되자 위 3건의 용역에 대한 "연장 여부"란에 "연장"으로 기재한 '종합평가결과 확정(안)'을 제12차

82) 지속가능경영팀은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SLA, 보유기술이전형, 신제품 공동기술개발형, 제안형(원가절감), 계 4개 유형의 성과공유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SLA 성과공유과제 등록 신청,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신청 업무를 제외한 SLA 관련 업무는 ✡팀에서 수행

83) AB는 재단의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로 SLA 실무담당자인 ✡팀 사원 AM가 등록되어 있어 AM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등록업무를 수행

84)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85)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대상사업 총 55건 중 2016년도 수의계약 대상인 용역 14건은 2015. 10. 26. 시달한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계획 알림" 문서에 따라 2015. 11. 9.~ 11. 13. 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1건은 2015. 12. 1. 시달한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계획 알림" 문서에 따라 2015. 12. 8.~ 12. 18. 평가

SLA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내용의 “서비스수준평가(SLA)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실-6685) 문서를 기안하여 차장 Y, 팀장 Z, 실장 AA, 본부장 AC의 결재를 받아 SLA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같은 날 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위 3건의 용역은 수의(연장)계약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X은 2015. 11. 30. 위 재단의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성과확인 현장심사 시 위 14건의 용역 중 위 3건의 용역 외에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의 수탁업체(▼▼주식회사)도 대기업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성과공유과제 등록취소 대상이 됨에 따라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차장 Y과 함께 현장심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도 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위 수의(연장)계약 확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같은 날 위 SLA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통보하는 내용[86]의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알림”(⊗실-6775) 문서를 기안[87]하여 차장 Y, 팀장 Z, 실장 AA의 결재를 받아 사업관리부서인 ◆지역본부(3건)와 ◐지사(1건)에 이를 시행하였다.

이에 위 2015. 11. 30. 자 문서를 근거로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는 2015. 12. 30.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 등 3건의 용역에 대해, 위 공사 ◐지사는 2015. 12. 31. “◐공항 주차, 청소, 영접, 조류퇴치 용역”에 대해 기존 수탁업체와 각각 수의계약(계약기간: 2016. 1. 1.~2017. 12. 31.)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성과공유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주식회사 등 위

86) 평가결과(점수, 등급)는 개별사업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87) X은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김포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이 제외된 것과 문서 기안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함

4개 업체에 수의(연장[88])계약을 체결해주는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Y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3. 2. 시행한 “SLA 성과공유과제 등록 요청” 문서에 대한 결재를 통해 “3-가-1)항”의 경우와 같이 수의계약용 확인서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6월경 위 4건의 용역 중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을 제외한 3건의 용역 등록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3-가-1)항”의 경우와 같이 AB로부터 들었기[89] 때문에 위 3건의 용역이 성과공유과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Y은 2015. 10. 26.과 11. 24. X이 기안한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계획 알림” 문서와 “서비스수준평가(SLA)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를 검토하면서 “3-가-1)항”의 경우와 같이 성과공유과제 등록이 거절된 위 3건의 용역을 평가대상 및 SLA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서 제외하도록 X에게 제외하도록 지시 또는 직접 제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Y은 2015. 11. 30. 위 재단의 성과확인 현장심사를 X과 같이 수행하여 “3-가-1)항”의 경우와 같이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이 수의계약용

88) 4건 중 ◆지역본부 3건의 경우 계약체결 시 명칭은 연장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용역계약의 기간연장 사유는 한국공항공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2012. 12. 12. ◇실-5886) 제19조의 약정에 따라 ①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정해져 있음
- 그런데 성과공유제는 위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 ◆지역본부 관련자들도 수의계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89)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같은 날 X이 기안한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알림” 문서를 검토하면서 성과공유과제 등록이 거절된 3건과 등록취소 대상이 된 위 1건 계 4건의 용역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X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제외 또는 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그대로 결재[90]하였다.

그 결과 “3-가-1)항”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성과보상금 지급 부적정

한국공항공사는 2010. 12. 24. 대·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모든 용역 수탁기업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SLA) 평가기준」이 포함된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평가(SLA 제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대·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에게 위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표 2]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4건의 용역 수탁업체에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계약금액과 별도로 총 3.5억여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90) Y는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김포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이 제외된 것과 문서 결재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함

[표 2] 승인 없이 성과보상금 지급 명세

(금액 단위: 천 원)

용역명	업체명	5년(2013~2017년)간 계약금액	성과보상금 지급액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공항 토목·조경시설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10,830,361	138,252	37,289	29,220	31,875	38,501	1,367
♡공항 하이드랜트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2,176,918	17,442	2,859	3,011	6,360	5,212	0주)
♡공항 통신시설 위탁관리용역	▽▽주식회사	10,787,016	180,951	43,481	30,426	38,604	44,565	23,875
◐공항 주차, 청소, 영접, 조류퇴치 용역	▶▶군인회	1,245,512	16,941	3,934	4,076	4,130	3,470	1,331
합계		25,039,807	353,586	87,563	66,733	80,969	91,748	26,573

주: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미지급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주장 및 판단

X과 Y은 성과공유과제가 아닌 용역의 경우 수의(연장)계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2015. 11. 30. 시행한 “2015년도 하반기 SLA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알림” 문서는 SLA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한 것이지 수의(연장)계약 여부를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공유과제 등록이 거절된 용역과 등록취소 대상이 된 용역을 SLA 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시설 위탁관리 SLA 운영기준」 제15조 및 [별표 1] “SLA 운영업무 절차”에 따르면 수의(연장)계약 대상 용역을 선정하기 위한 SLA 종합(연장)평가는 SLA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X과 Y은 제12차 SLA 심의위원회에 “2015년도 하반기 SLA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 안건뿐만 아니라 수의(연장)계약이라고 명시된 “종합평가결과 확정(안)” 안건을 상정하는 문서를 기안·결재하여 위 위원회에서 수의(연장)계약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었으며, 위 심의결과를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내용의 위 2015. 11. 30. 자 문서에도 수의(연장)계약이라고 명시하여 기안·결재하는 등 수의(연장)계약을 하도록 ✡팀 직원인 위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3-가. 수의계약 업무 부당 처리"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수의계약용 확인서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공유제 관리・운영 및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3-나. 성과보상금 지급 부적정"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계약체결 이후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후에 계약금액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概算)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 후 정산)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위 지급기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위 답변은 인정하

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X, Y의 행위는 한국공항공사「취업규칙」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인사규정」제52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① 성과공유제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X과 Y을 한국공항공사「인사규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문책)**

② 앞으로 법령의 근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보상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문책·주의요구

제 목 제설작업 태만 및 특별점검 미실시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사건 개요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는 2016. 1. 23. ○●국제공항에 내린 강설(强雪)로 인해 폐쇄[91]된 주·보조 활주로를 대상으로 2016. 1. 23.부터 1. 25.까지 제설작업[92]을 실시하면서 주 활주로 제설작업 후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 시 주 활주로와 교차하는쪽 활주로 갓길에 눈더미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지방항공청은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를 같은 해 1. 25. 12:24과 14:28 각각 개방하여 위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착륙하던 항공기가 위 눈더미에 부딪쳐 주날개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국제공항의 활주로등[93](滑走路燈)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2호, 2013. 12. 26.)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활주로가 끝나는 활주로 갓길 시작 지점으로부터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3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91) 주 활주로는 2016. 1. 23. 17:50, 보조 활주로는 다음 날 05:17 폐쇄됨
92) 총강설량: 16㎝, 적설량: 11~12㎝
93) 이착륙 항공기가 활주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행장 등화시설

그리고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0호, 2013. 12. 26.) 제10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공사는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항공기를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등의 눈더미를 제거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그림 1]과 같이 포장구역인 활주로 갓길의 경우 시작지점부터 활주로등까지의 3m 구역은 눈더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15m 지점까지는 눈더미를 0.3~1m 미만으로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눈더미의 최대허용높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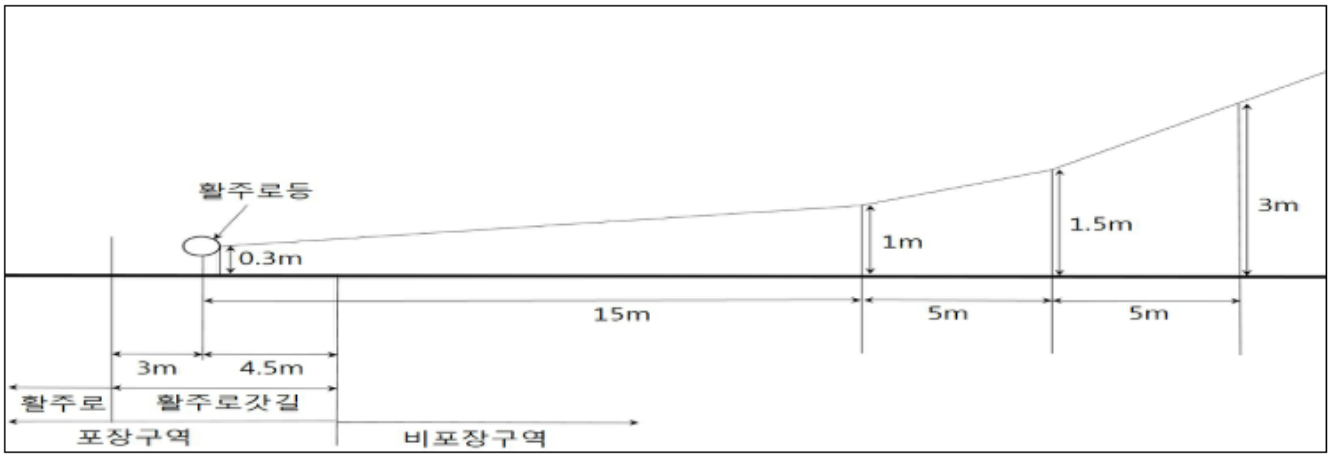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국제공항은 주 활주로(총길이: 3,180m)와 보조 활주로(총길이: 1,910m)가 십자형태로 교차하고 있다.

한편, 「○●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 4.5 및 <부록 2>"○●국제공항 공항제설계획"에 따르면 ① 위 공사 ○●지역본부 ✧단 ◈팀차장(이동지역반장)은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② ◈팀장(이동지역통제실장, 상황반장)은 제설작업 완료 시 제설결과를 위 공사 ○●지역본부 제설대책본부 ◉반에 전파하고 ○●지방항공청에 설빙고시보[94] 발행을 요청하도록 ♧팀(♧반)에 의뢰하며,

94)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7호, 2014. 12. 23.) 제2조 제67호의 규정에 따르면 활주로, 활주로 갓길 등 이동지역내에 눈 및 얼음 등 장애상태의 존재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운항

③ ♧팀장(♧반장)은 제설작업 종료 후 포장구역의 이물질 방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빙고시보 발행을 위한 “미끄럼측정 결과서”(활주로에 대한 마찰계수를 측정[95])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며, ④ ○●지방항공청은 설빙고시보 등을 통해 활주로 개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 ○●지역본부 ✧단 ◈팀은 제설작업 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활주로 갓길 시작지점부터 활주로등까지의 3m 구역은 눈더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활주로등에서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15m 지점까지는 눈더미를 0.3~1m 미만으로 제거하여야 했다.

그리고 위 공사 ○●지역본부(✧단 ♧팀)는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 종료 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가 교차하는쪽의 활주로 갓길에 눈더미가 쌓였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설빙고시보 발행을 위한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 활주로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제설작업 태만

위 공사 ○●지역본부 ✧단 ◈팀 과장 AD는 2012. 9. 1.부터 2018. 1. 5. 현재까지 위 공사 ◆지역본부 ✧단 ①팀 차장 AE은 2014. 2. 5.부터 2016. 2. 14.까지 각각 위 공사 ○●지역본부 ✧단 ◈팀 과장 또는 차장의 직위에서 활주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담당하거나 현장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1) AD의 경우

위 사람은 ◈팀 직원으로 ◈팀 차장인 AE의 지시에 따라 2016. 1. 25. 11:15부

관련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ubikais.go.kr, ais.casa.go.kr)에 고시하는 문서

95) 항공기가 활주로에 이착륙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정도 등을 측정

터 같은 날 13:50까지 제설차량을 직접 조작·운전하면서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AD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제설작업에 대한 모의훈련 및 교육에 참가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최대허용 높이 기준 미만으로 눈더미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AD는 송풍기능이 있는 제설차량으로 주 활주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주 활주로에 쌓인 눈을 주 활주로 갓길 시작 지점까지만 밀어내고,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하면서도 보조 활주로에 쌓인 눈을 보조 활주로 갓길 시작 지점까지만 밀어냄으로써 갓길에는 눈이 쌓여있는 상태가 되어 위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 후에는 [그림 2]와 같이 주·보조 활주로 교차지역쪽 활주로 갓길의 활주로등이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폭 3~3.5m[96], 높이 1.5m로 눈이 쌓여 있게 되었다.

그런데 AD는 보조 활주로의 눈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5. 13:50 제설작업 현장에서 AE에게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종료하자고 이야기하였고, AE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설작업을 종료한 후 AE이 ◈팀장을 대신[97]하여 위 ◉반에 2016. 1. 25. 13:57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이 종료되었다고 무선전화로 통보하였다.

96) 주 활주로등에서 주 활주로 방향으로 2m, 비포장구역 방향으로 1~1.5m
97) 토목팀장(상황반장)은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 중에 제설상황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하여 위 공사 제주역 본부 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대기중이었기 때문에 제설작업 상황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음

[그림 2] 눈더미 위치 및 사고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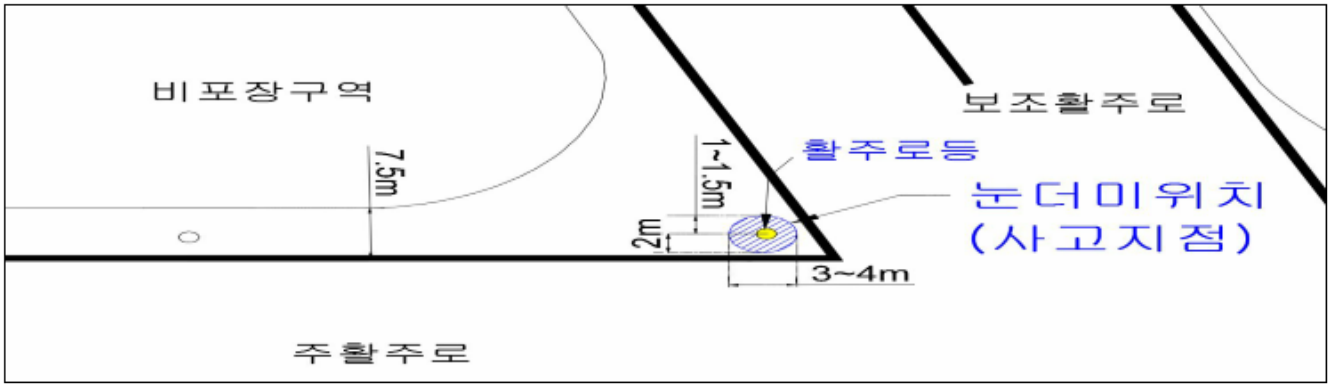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후 위 공사 ♧팀에서는 ○●지방항공청에 마찰계수 측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방항공청은 2016. 1. 25. 14:28 보조 활주로를 개방[98]하여 위 주·보조 활주로 교차지역쪽 활주로 갓길에 활주로등이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최대 높이 1.5m의 눈더미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16. 1. 25. 22:50 주식회사 ◀◀의 항공기(기종: B747)가 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착륙하면서 위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가 교차하는 활주로 갓길 구역에 쌓인 눈더미와 좌측엔진이 충돌하여 주 날개 등이 손상되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 손실도 우려된다.

2) AE의 경우

위 사람은 제설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팀 차장으로서 위 제설차량에 탑승하여 AD와 함께 제설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98) ○●지방항공청은 2016. 1. 25. 12:24 주 활주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였으나 보조 활주로가 제설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항공기의 이착륙을 승인하지 않다가 보조 활주로가 개방된 같은 날 14:28에 이착륙을 승인

그리고 AE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제설작업에 대한 모의훈련 및 교육에 참가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최대허용 높이 기준 미만으로 눈더미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E은 AD가 주·보조 활주로에 쌓인 눈을 활주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3-가-1)항"의 내용과 같이 최대허용 높이 기준 이상의 눈더미가 쌓여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제설작업을 종료하자고 이야기하자 이에 동의한 후 "3-가-1)항"의 내용과 같이 위 ◉반에 제설작업을 종료하였다고 직접 통보하였다.

그 결과 "3-가-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제설작업 종료 후 특별점검 미실시

위 공사 ○●지역본부 ✧단 ♧팀은 2016. 1. 25. 14:00경 위 ◉반으로부터 보조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보조활주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14:10 보조 활주로의 마찰계수만 측정한 후 해당측정 수치에 이상이 없자 "미끄럼측정 결과서"[99]를 작성한 다음 ○●지방항공청(Φ실)에 위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지방항공청은 보조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 갓길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모른채 위 ♧팀에서 제출한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근거로 설빙고시보 발행[100] 등을 통해 보조 활주로를 개방하였다.

그 결과 보조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 갓길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실시되지 못함에

99) 공항운영규정 <부록 2> "제주국제공항 공항제설계획"에서 정한 "양호"(기준 0.4 이상, 측정값 0.87), "운항상 중요 정보" 항목에 "활주로 0% 오염됨"으로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작성

100) 그동안 위 공사 ○●지역본부에서 마찰계수 측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미끄럼측정 결과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면 위 본부에서 위 청에 설빙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설빙고시보가 발행되어 왔음

따라 위와 같이 눈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3-가-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이 건 ◈팀 AD 및 AE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공항에 위 제설작업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눈이 자연적으로 녹아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는 공항에 강설 등 비상상황발생 시 항공기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을 미리 예방하거나 위기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설작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고, 훈련도 수차례 실시하였는데 AD와 AE은 눈이 자연적으로 녹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설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 공사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제설작업 및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제설작업 관련 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2016. 1. 25. 12:00 위 공사와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항공기 운항 재개시간을 2016. 1. 25. 20:00에서 15:00으로 앞당긴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위 공사가 긴급하게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면서 제설작업 및 점검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언론보도문에는 ○●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재개가 2016. 1. 25. 15:00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 개방시간이 확정되게 기재되지 않았고, 보조 활주로의 경우 당초 개방예정인 2016. 1. 25. 15:00보다 1시간 3분 빠른 13:57에 보조 활주로 제설작업을 종료하였다고 위 공사가 ○●지방항공청에 보고하였으며, 설빙고시보 발행 요청도 개방 예정시간보다 50분 빠른 같은 날 14:10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때 제설작업을 시급히 종료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설작업이 비록 늦어진다 하더라도 설빙고시보 발행 요청을 늦게 하는 등으로 개방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국제공항의 보조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 및 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D, AE의 행위는 위 공사「취업규칙」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위 공사「인사규정」제52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① ○●국제공항의 보조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D 및 AE을 한국공항공사「인사규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문책)**

② 앞으로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 종료 후 특별점검 없이 활주로가 개방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밸브박스덮개 자체 개발로 예산절감 등에 기여**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모 범 부 서 서울지역본부 플랜트시설팀

모 범 내 용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플랜트시설팀은 2015년 9월 김포공항 등 공항 계류장[101] 지하 급유시설에 사용되는 밸브박스덮개[102](valve box cover)를 자체 개발하였다.

위 부서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 김포공항 계류장 지하의 급유배관 제어기기 설비용 지하 밸브박스(valve box) 29개소에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밸브박스덮개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자 2015년 3월 위 제품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미국 ◧◧ 회사로부터 밸브박스덮개를 구매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제품의 가격이 고가(중형: 73,870천 원, 소형: 52,000천 원)일 뿐 아니라 스프링 장력에 의한 경첩(hinge) 개폐 방식[103]이어서 개폐작업에 2인을 필요로하는 등 조작이 불편하고, 부품 파손 시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유지보수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수요가 부족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위 부서는 2015년 3월 위 밸브박스덮개를 자체 개발하기로 하고, 먼저 사

101)비행을 종료했거나 준비 중인 항공기가 대기하는 장소
102)일종의 맨홀(manhole) 뚜껑임
103) 경첩(hinge)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

용재료를 분석하던 중 항공기용 알류미늄 합금강으로 밸브박스덮개를 제작하면 차량 및 용접구조용 알류미늄 합금강으로 제작된 기존 미국 ◧◧ 회사 밸브박스덮개보다 무게를 경량화할 수 있고 인장강도[104](引張强度) 등의 기계적 성질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105]하고 위 재료로 밸브박스덮개 제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는 항공기 하중을 고려한 최대작용하중(45ton)[106]을 견딜 수 있도록 강판 두께를 50㎜로 설계[107]하고, 개폐작업이 용이하도록 기존 경첩(hinge) 개폐방식 대신에 미끄럼(sliding) 개폐방식을 적용하여 밸브박스덮개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그 후 위 부서는 자체 설계한 제작도면을 이용하여 30,000천 원의 비용으로 중형 밸브박스덮개(폭 1,100㎜, 길이 1,860㎜)를 시험제작하여 2015. 8. 23. ♡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이 확인되자 2017년 11월 말 현재까지 노후화된 밸브박스덮개 14개를 자체 설계한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그 결과 위 부서는 위와 같이 자체 설계한 제품으로 밸브박스덮개를 교체하면서 미국 ◧◧ 회사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437,870천 원의 예산을 절감[108]하였고 향후 2019년까지 15개의 밸브박스덮개를 자체 설계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357,000천 원의 예산이 절감[109]될 것으로 예상[110]될 뿐 아니라 밸브박스덮

104)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파단하지 않고 견디는 최대의 능력
105)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항공기용 알류미늄 합금강의 인장강도는 5,496㎏/㎠이고 차량 및 용접구조용 알류미늄 합금강의 인장강도는 2,896㎏/㎠임
106) 미연방항공청의 공항 포장설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맨홀커버는 45ton의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음
107) 45ton 하중의 경우 두께 50㎜의 강판을 사용하면 안전함을 2015. 4. 1.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
108)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형 밸브박스덮개 5개, 소형 밸브박스덮개 9개 등 총 14개의 밸브박스덮개를 교체하여 각각 247,870천 원, 190,000천 원 총 437,870천 원의 예산을 절감
109)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형 밸브박스덮개 1개, 소형 밸브박스덮개 14개 등 총 15개의 밸브박스덮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각각 42,000천 원, 315,000천 원 총 357,000천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110) ○●공항과 ○◀공항 계류장에도 각각 4개와 1개의 밸브박스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2009년 이후 설치되어 10년 이상 경과 후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절감 기대금액 미산출

개의 부품 파손 등 하자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가 가능해졌고, 미국 ◧◧ 회사 제품보다 무게가 가벼운 반면 강도는 향상되었으며 기존의 경첩(hinge) 개폐방식 대신 미끄럼(sliding) 개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1인이 밸브박스덮개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등 업무효율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 치 사 항 위 부서는 밸브박스덮개를 자체 개발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어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의 ◆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와 ○◎지사 등 11개 지사는 폭발물흔적탐지장비[111] 등 방사성동위원소[112] 내장 기기를 사용[113]하면서 사업소[114]별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하도록 정한「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변동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법」제53조 제2항과 제57조 및 제1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를 신고하여 사용하는 자가 기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

111)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의 휴대품, 위탁수하물 중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X-RAY 판독 후 의심가는 폭발물 및 폭약 성분을 탐지하기 위한 항공보안장비

112) 원자핵이 불안정하여 안정된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말하며, 한국공항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는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진 용기에 밀봉된 선원임

113) 한국공항공사 본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미사용

11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부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주체가 원자력관계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한국공항공사와 같이 지역본부 및 지사가 하나의 부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주체가 원자력관계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각각 사업소로 신고 수리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11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및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115]를 부과하는 한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용금지에 갈음하여 과징금[116]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신고하여 사용 중인 한국공항공사의 지역본부와 지사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유 수량 등 기존 신고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신고사용자가 기존 신고사용을 변경하면서 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5. ~ 2017. 12. 7.) 중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와 ○◎지사 등 11개 지사가 보유한 방사성동위원소 89개의 변경신고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와 ○◇지역본부는 2017. 9. 20. ○◇지역본부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대[117]를 ◆지역본부에서 사용하도록 이동

115)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300만 원(「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8조 및 [별표 12])
116)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은 3,000만 원(「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
117)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니켈-63(370MBq) 1개가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내장됨

시킴으로써 ◆지역본부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수량은 증가하고 ○◇지역본부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수량은 감소하였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각각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동에 따른 변경신고 미조치 명세”와 같이 ◆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와 ○◎지사 등 6개 지사는 2013. 8. 9.부터 2017. 9. 20.까지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13회에 걸쳐 지역본부 또는 지사 간에 이동시키면서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수량 등의 변동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신고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수량 등의 변동사실을 미신고한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등 2개 지역본부와 ○◎지사 등 6개 지사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신고하여 사용 중인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유 수량 등 기존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변경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유 수량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등 [별표] 기재 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사에 대해「원자력안전법」제57조 및 제1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동에 따른 변경신고 미조치 명세

연번	이동일자	이동장소		이동내역
		보낸 사업소	받은 사업소	
1	2017. 9. 20.	○◇지역본부	◆지역본부	방사성동위원소 니켈-63(370MBq) 1개
2	2016. 12. 30.	○◇지역본부	○◎지사	
3	2016. 5. 17.	○◎지사	○◇지역본부	
4	2015. 7. 23.	◐지사	○◎지사	
5	2015. 5. 29.	○◎지사	◐지사	
6	2015. 5. 15.	○◇지역본부	△지사	
7	2015. 4. 1.	◆지역본부	○◎지사	
8	2015. 1. 15.	○◆지사	○◇지역본부	
9	2014. 6. 19.	△지사	○◇지역본부	
10	2014. 2. 18.	◆지역본부	○□지사	
11	2014. 2. 7.	○□지사	◆지역본부	
12	2013. 10. 7.	◆지역본부	○■지사	
13	2013. 8. 9.	○■지사	◆지역본부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현장설명 불참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항 등 전국14개 공항[118]을 관리·운영하면서 「재산관리규정」(2017. 4. 27. 공사 규정 제247호)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 위 공사의 재산 중 임대 대상시설 814개소의 32.3%인 263개소(2017년 11월 기준)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고 있다.[119]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120]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되,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118) ♡, ○◀, ○●, ○■, ○□, ○▽, △, ○◆, ○◎, ○▼, ◐, ○◁, ○△, ○▲ 등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119) 한국공항공사는 업무용 시설(출입국, 여객·화물운송 업무 등에 필요한 시설)의 경우 「재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시설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

120)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고, 위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121]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 임차인 선정기준」(2015. 1. 12. 공사 지침 제208호)에 따르면 제4조 제1항에 상업시설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 외에 실적에 의한 제한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공사는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참가 등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122]을 이용하여 상업시설 임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문을 자체 홈페이지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게시하면서 입찰유의사항, 낙찰자 준수사항, 임대료 산정방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현장설명

121) 국가계약법은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도 적용

122)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전자입찰 시스템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을 이용

시 안내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 희망자에게도 현장설명 시 안내하는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23]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공사의 재산을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정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5.~12. 7.) 중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7년 11월) 위 공사의 상업용 시설 임대를 위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결과, 위 기간 동안 실시한 총 314건의 경쟁입찰 중 94.6%인 297건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입찰유의사항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유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는[124]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공사의 재산을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 위한 입찰 시 현장설명 불참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인의 경쟁을 통한 임대료 수입 증대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위 공사가 정한 현장설명의 일시·장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의 재산을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에서 현장설명

---

123) 인천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상업용 시설 임대를 위한 경쟁입찰 시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입찰참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자체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공고문과 함께 게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24)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임차인 선정 등을 위해 현장설명 미실시

참가를 제외하고, 현장설명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입찰공고문과 함께 게시하여 입찰참가 희망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사의 재산을 상업용 시설로 임대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현장설명 참가를 입찰참가의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부실설계에 대한 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2010. 10. 25.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AF) 외 2개 회사[125]와 설계용역계약(총용역준공금액 3,964,789,327원)을, 2010. 12. 29.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AG) 외 1개 회사[126]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총용역준공금액 3,118,145,000원)을 맺은 후 이에 따라 "♡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127]를 시행(총계약금액 134,267,703,317원, 2018. 9. 9. 준공 예정)하다가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의 요청에 따라 2016. 6. 30. 설계변경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구「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0. 12. 20. 개정되기 전의 제13조의6 제1항 [별표 8]과 2010. 12. 20. 개정된 제28조 제1항 [별표 10]에 따르면 발주청[128]은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

125) 주식회사 ◁◁사무소 50%,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AH) 25%,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25%
126) 주식회사 ▷▷사무소 66.9%,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AN) 33.1%
127) 2014. 5. 29. 주식회사 ■■(대표이사 AO)과 공사계약
128) 구「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

여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용역자가 설계내역서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작성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가 이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항공사는 설계·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공사는 2016. 6. 30. 주식회사 ■■으로부터 설계도면에는 사무동 1층 정면 "☼"(홀) 위쪽의 규격이 81.31m×15.85m인데도 설계내역서에는 37.575m×7.23m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위 설계내역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확인되자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307,422,724원)와 같은 단가에 낙찰률(73.565%)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협의율 86.783%)하여 공사비를 573,831,055원[129]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는 위 시설공사의 낙찰률은 73.565%(단가 961,805,526원)인데도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130]으로 협의율 86.783%(단가 1,134,620,661원)를 적용하여 위 규격의 단가를 산정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 ■■에 공사비 172,815,135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등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가 100% 출자하였음

129) 설계변경가 1,134,620,661원 - 계약가 560,789,606원

130)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등으로 설계변경할 경우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

그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2017. 12. 7. 현재까지 주식회사 ◁◁사무소 등 설계·설계감리 용역수행 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법에 따라 벌점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① 규격을 부실설계한 주식회사 ◁◁사무소, 주식회사 □□사무소, 주식회사 ◆◆과 책임기술(책임설계)자,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에 관한 검토·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주식회사 ▷▷사무소, 주식회사 ◇◇사무소와 책임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이 미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부실벌점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보안검색감독자 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국토교통부 ②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① 국토교통부 ②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항공보안법」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보안계획에 따라 소관 14개 공항 내 총 26개 승객검색구역에서 8개 위탁업체(직원 844명)가 담당하는 보안검색 업무수행의 적정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해 총 67명의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항공보안법」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항공보안법」제10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131]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항공보안법」제35조 및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131) 「항공보안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 및「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안계획을 승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항공보안계획(2014. 12. 19.)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승객검색구역별로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2016. 6. 2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에 따르면 공항보안책임자[132]는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의 2016. 6. 10. 개정된 구「직제규정시행세칙」(2016. 12. 8.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공항과 △공항의 경우 승객검색구역이 각각 3개, 2개이나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으로 1명만 배정하여 보안검색감독자가 1명만 배치되었고, ○△공항과 ○▲공항의 경우 승객검색구역이 각각 1개이나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보안검색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공사는 2016년 9월 공기업이 인력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한「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보안검색감독자가 부족하여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11명[133]의 보안검색감독직 증원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11. 24. 위 요청대로 보안검색감독직 11명을 증원하도록 통보[134]하였다.

---

132)「항공보안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수립하는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고, 공항의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자(본사는 안전보안본부장,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 지사는 지사장)

133) 대구공항 2명, 청주공항 2명, 무안공항 1명, 광주공항 1명, 여수공항 1명, 양양공항 2명, 군산공항 1명, 원주공항 1명

134) 한국공항공사는 별정직, 일반직, 전문직, 보안검색감독직 및 청원경찰을 구분하여 총 302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보안검색감독자 11명을 포함한 134명(공항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증원

따라서 위 공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보안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대로 보안검색감독자가 부족한 공항의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는 2016. 12. 8.「직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위 11명 중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으로 6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5명은 일반직으로 증원하였다.

그러면서 위 6명 중 4명은 보안검색감독자의 원활한 교대근무 지원 필요성에 따라 ○■ 등 4개[135]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으로 배정하고 1명은 보안검색감독자가 부족하게 배치된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으로 배정하였으나 보안검색감독자가 2명 부족(승객검색구역은 3개이나 1명만 배치)하게 배치된 ○◆공항의 경우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으로 1명만 배정하고,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이 미배정된 ○△,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직 정원은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공항은 3개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 2명만 배치되어 이들이 승객검색구역을 순회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고 있고, ○△공항과 ○▲공항은 보안검색감독자 없이 승객검색이 이루어지는 등 위 3개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7. 12. 7. 감사일 현재까지 한국공항공사의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①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

하도록 통보

135) ○■, ○▽, ○□, ○▼공항으로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가 부족 배치되었던 공항은 아님

를 미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내용, 국가항공보안계획및 자체보안계획을 위배하여 소관 공항의 승객검색구역에 보안검색감독자를 부족하게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항공보안법」제10조를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항공보안법」제35조 및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경영평가 성과급[136]과 내부 성과급[137]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시달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내부 성과급의 경우에도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위 지침에 따라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

136) 정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137) 경영평가 성과급과 별개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공사는 2016. 6. 20.「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정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3급 이하[138]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139]하면서 [표]와 같이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정부 경영평가 결과 S, A, B등급에는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1.65~1.86배 차이가 나도록 차등수준을 각각 정하였고, 내부 성과급의 경우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 차이가 1~1.22배가 되도록 차등수준을 각각 정하였다.

[표] 한국공항공사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성과급 최고등급 및 최저등급 지급률

구 분		정부경영평가등급 (차등수준)	최고등급 지급률(A)	기준 지급률 (@)	최저등급 지급률(B)	최고/최저 차등비율(A/B)
3급 이하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S등급(@±75%)	325%	250%	175%	1.86
		A등급(@±52%)	252%	200%	148%	1.7
		B등급(@±37%)	187%	150%	113%	1.65
		C등급(@±37%)	137%	100%	63%	2.17
		D, E등급	미지급			
	내부 성과급	S등급(@±25%)	275%	250%	225%	1.22
		A등급(@±18%)	268%	250%	232%	1.16
		B, C등급(@±13%)	263%	250%	237%	1.1
		D, E등급(@)	250%	250%	250%	1

주: 개인별 성과급은 평가연도의 개인별 기준월봉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공사는 2017. 7. 2. 기획재정부로부터 종합,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정부 경영평가 결과[140], 종합 및 주요사업 부문은 B

138) 2급 이상 직원들의 성과급 차등수준은 2배로 운용
139) 기존에 매년 내부경영실적평가편람에서 정하던 것을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규정
140) 종래에는 종합 등급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종합등급 외에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을 신설하여 평가해 기준 지급률을 결정

등급, 경영관리 부문은 C등급이고 이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기준 지급률은 137.5%인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위 공사는 2017. 7. 26. 3급 이하 직원(1,393명)에 대한 2016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위 기준 지급률(137.5%)에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정부 경영평가 B등급의 차등수준(±37%)을 적용하고, 내부 성과급의 경우 위 시행세칙에서 정한 정부 경영평가 B등급의 기준 지급률(250%)에 차등수준(±13%)을 적용하여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가 경영평가 성과급은 1.74배[141], 내부 성과급은 1.1배[142]가 되도록 정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7. 28.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 계 20,877백만 원(경영평가 성과급 7,410백만 원, 내부 성과급 13,46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정부 지침과 다르게 성과급 차등수준이 결정되고 있고, 성과 등급 간 차등을 두어 직원 및 부서의 성과제고를 위해 도입한 성과급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정부 지침에 맞게 성과급 차등수준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3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 및 내부 성과급 지급 시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41) [최고등급 지급률(137.5+37=174.5)]/[최저등급 지급률(137.5−37=100.5)]=1.74
142) [최고등급 지급률(250+13=263)]/[최저등급 지급률(250−13=237)]=1.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임직원 외부활동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공항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공항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2006. 6. 1. 한국공항공사)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 임직원의 외부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강의내용을 사장에게 신고하고, 외부강의 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143]의 검토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144]

그리고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43)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으로 지정됨
144)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신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5. ~ 12. 7.) 중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위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 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사 청원경찰 AJ의 경우 사전 신고 및 승인 없이 2016. 1. 9.부터 같은 해 1. 30. 사이에 4회(월 3회 초과)에 걸쳐 ▪대학교에서 공중보건 관련 강의를 하는 등 2016. 1. 9.부터 같은 해 8. 6.까지 토요일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계 1,280,000원을 수령하였고, ◈◈훈련원 본부장 AK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대학교 등 4개 기관에서 8회에 걸쳐 자문 및 회의 등을 하고 그 대가로 계 2,960,000원을 받는 등 [별표]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 미신고 등 현황(2015~2016년)"과 같이 위 공사 임직원 19명이 36회에 걸쳐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외부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계 9,43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19명에 대하여 위 행동강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소속 임직원이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의 외부활동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대가를 받는 외부활동 미신고 등 현황(2015~2016년)

(단위: 원, 회)

연번	성명	소속	직급	직위	대가 지급기관	외부강의 등 내용	수령금액	횟수
1	AJ	○◁지사	청원경찰	반장	◧대학 산학협력단	강의	1,280,000	10주)
2	-	-팀	-급	과장	(사)-연구원	자문	100,000	1
3	AB	-팀	-급	과장	(사) -연구원	자문	100,000	1
4	-	⧓본부장	임원	본부장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	300,000	1
5	-	-팀	-급	차장	(사)-	자문	850,000	1
6	-	-팀	-급	과장	-협회	회의	300,000	1
7	-	-본부장	임원	본부장	○◇상공회의소	회의	200,000	1
8	-	○▲지사	-급	과장	-협회	회의	200,000	1
9	-	○◇보안관리팀	-급	대리	-대학교	강의	720,000	1
10	-	-팀	-급	과장	-협회	회의	300,000	1
11	-	○▽운영팀	-급	대리	-대학교	강의	300,000	1
12	-	◆지역본부장	-급	본부장	-협회	회의	150,000	1
13	-	-팀	-급	팀장	-협회	회의	150,000	1
14	-	-본부장	임원	본부장	-협회	회의	300,000	1
15	AK	◈◈훈련원	-급	본부장	(사)-	자문	960,000	3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	300,000	1
					◩대학교산학협력단	자문	1,500,000	3
					-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미나	200,000	1
16	-	-팀	-급	차장	-인증센터	심사	150,000	1
17	-	◈◈훈련원	-급	교수	-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의	600,000	1
18	-	◈◈훈련원	-급	교수	-조직위원회	회의	70,000	1
					재단법인 -연구원	회의	100,000	1
19	-	-팀	-급	과장	-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의	300,000	1
계	19명						9,430,000원	36

주: 2016년 1월 및 7월의 경우 강의 횟수가 월 3회 및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전 승인 대상
자료: 한국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